

**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일시: 1차/ 2017년 4월 5일(수) 19시 ~ 21시
2차/ 2017년 4월 19일(수) 19시 ~ 21시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 9간담회실

◎ 주최: 정춘숙 국회의원실·십대여성인권센터
주관: 국회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마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기획안

○ 간담회 취지

1.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현실세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성매매산업이 가상현실세계에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매매의 시간과 공간, 연령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무한 확장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성매매를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대책이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2.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을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소·고발,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률 (제)개정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3. 2017년에는 그동안의 결과물을 토대로 4, 5월 중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발의를 목표로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왔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간담회는 2가지 주제로 개최하는데, 1차 간담회 주제는 쟁점이 되는 새로운 기술산업인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강화”,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호 합의점을 모색해 보는 것과 2차 간담회의 주제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법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열린다.

○ 1차 간담회

일시: 2017년 4월 5일(수) 오후 7시부터 9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주제: 쟁점 정리

- “새로운 기술산업인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강화”
- “표현의 자유”
-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

초청 전문가

1.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2. 김가연 변호사 (오픈 넷)
3. 유영기 대표 (클린 UCC)

○ 2차 간담회

일시: 2017년 4월 19일(수) 오후 7시부터 9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주제: 기술적 문제 보완

초청 전문가

1. 조재운 대표 (성남 교육희망네트워크)
2. 섭외중 (카카오톡)
3. 조신숙 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4.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 초청 전문가는 변동될 수 있음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마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 1차 간담회 순서

19:00~19:10	사회: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사말: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서순성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법무법인(유)원)
19:10~19:30	발표 1.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실태와 현황 박미현, 성혜정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
19:30~19:50	발표 2.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19:50~20:10	발표 3.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20:10~20:30	발표 4. 유영기 대표 (클린 UCC)
20:30~21:00	토론

○ 2차 간담회 순서

19:00~19:10	사회: 박숙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평택지원 국선변호사)
	인사말: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서순성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법무법인(유)원)
19:10~19:30	발표 1. 조재운 대표 (성남 교육희망네트워크)
19:30~19:50	발표 2. 미정
19:50~20:10	발표 3. 조신숙 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0~20:30	발표 4.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20:30~21:00	토론

참고자료)

1.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을 정립

- 현재 사용하는 정의 :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 문제점 : 카카오톡, 라인 등과 같은 대화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 정립
- 차이점 :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이용자가 타인의 아이디, 전화번호, 이름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점(?)

2.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사업자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화 내용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 방안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확대 방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여가부에서 과거 제안하였으나, 법제처(?)로부터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하게 되었다는 연혁 참고)
- 성매매 등에 이용되는 대화 내용을 확인할 경우 제재하기 위한 조치 방안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포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 부과 대상인 사업자로 포함하거나, 기타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
- 등급제 규제 방안
-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방안
-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축의 규제 강화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위한 각종 방안 연구, 집대성

3.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사업자에 대한 형사 제재

**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일시: 1차/ 2017년 4월 5일(수) 19시 ~ 21시
2차/ 2017년 4월 19일(수) 19시 ~ 21시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 9간담회실

◎ 주최: 정춘숙 국회의원실·십대여성인권센터
주관: 국회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십대여성인권센터

목 차

I . 전문가 초청 간담회 기획안	1
○ 간담회 취지	1
○ 1차 간담회 순서	2
II . 발표 자료	3
○ 발표1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	3
○ 발표2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4
○ 발표3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13
○ 발표4 유영기 대표 (클린UCC)	14
III . 참고 자료 (발표3 관련)	16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마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기획안

○ 간담회 취지

1.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현실세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성매매산업이 가상현실세계에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매매의 시간과 공간, 연령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무한 확장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성매매를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대책이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2.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을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소·고발,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률 (제)개정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3. 2017년에는 그동안의 결과물을 토대로 4, 5월 중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발의를 목표로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왔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간담회는 2가지 주제로 개최하는데, 1차 간담회 주제는 쟁점이 되는 새로운 기술산업인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강화”,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호 합의점을 모색해 보는 것과 2차 간담회의 주제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법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열린다.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마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 1차 간담회 순서

19:00~19:10	사회: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사말: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서순성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법무법인(유)원)
19:10~19:30	발표 1.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실태와 현황 박미현, 성혜정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
19:30~19:50	발표 2.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19:50~20:10	발표 3.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20:10~20:30	발표 4. 유영기 대표 (클린 UCC)
20:30~21:00	토론

발표 1.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실태와 현황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

메모

발표 2.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의견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영화 등 대중매체와 전화, 우편 등 대인간 매체의 구별이 뚜렷했던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디지털 시대는 대인간 매체와 대중매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매체간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한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부족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인터넷 대중화 이후 커뮤니케이션 방식, 문화 향유 방식이 달라진 특성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맺어지는 커뮤니티는 서로 유사한 정서와 취향, 취미 생활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같은 시대와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통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디지털 문화 부족은 연령이나 학력, 지역을 떠나서 공통의 관심사, 성향 등으로 문화적 유대가 형성되고 정서적 동질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보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과 유대감이나 공통의 경험의 폭이 커지기도 합니다. 아날로그 시대 매체환경에서는 내가 뉴스나 드라마를 보았다면 다른 사람도 보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클릭해서 원하는 것만 찾아가는 디지털 시대에는 내가 어떤 기사를 보았거나 콘텐츠를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드라마를 보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해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몰아서 중요한 장면들 중심으로 넘겨가며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매체의 변화는 문제 행동의 피해를 증폭시키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일어나는 범죄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의 내용만 본다면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인터넷을 통해 범죄

대상을 찾기도 쉽고 불법 콘텐츠 유통과 소비가 용이해 졌으며 이로 인해 불법적인 산업이 확산되면서 돈벌이에 악용되기도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될 때 피해자가 바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에 올라간 기록은 완전한 삭제가 없다는 점에서도 심각합니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없어진 매체 환경과 잘못된 통념과 문화와 결합하여 폭력과 범죄의 피해가 확산되고 청소년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화와 방송통신융합화는 새로운 미디어를 출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은 디지털 표준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며 동종기업은 물론 전화 컴퓨터 출판 등과 같은 이종기업과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간의 융합, 디지털화에 따른 유선·무선망의 융합에 따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 및 복합미디어의 출현은 콘텐츠의 수요를 더욱 촉발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매체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의 확대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새로운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 이십년전만 해도 음란물은 구하려고 애써야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빨라야 중학교 다닐 때 책이나 비디오를 통해 음란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써 찾지 않아도 음란물은 안방으로 배달됩니다. 상대가 어른이건 아이건 가리지도 않습니다. 스팸메일로, P2P로, 메신저, 게임 사이트, 각종 게시판, 케이블TV를 통해서도 찾아옵니다. 표현 수위도 높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매체 환경의 변화로 유해·불법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규제정책의 목표와 이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공익’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방송은 공공성에 기반하여 공익성을 추구하여 왔고, 통신은 산업성을 염두에 두고 공익성을 추구하여 왔기 때문에 방송통신 융합상황에서 이 둘을 포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방송통신의 융합상황에서 서비스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수용자 복지’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익성의 이념을 구현측면과 보호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왔습니다. 구현측면의 공익성은 다양성,

균형성과 공정성, 공정경쟁, 보편적 접근권과 같은 가치들이고, 보호측면의 공익성은 사회 가치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해소,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다. 구현측면의 공익성은 정책결정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구현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측면의 공익성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도 제 17조에 아동복지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매체 융합으로 방송의 공공성이나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와 같은 공적 책임 부분도 변하게 되고 내용규제의 어려움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융합시대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 아래서 현실성 있는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송모델, 인쇄모델, 통신모델로 나누어 심의 정책을 다르게 실시해왔습니다. 방송은 스펙트럼의 희소성, 도달성 및 침투성이 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로의 일방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심의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인쇄매체는 수용자가 돈을 주고 이용한다는 쌍방향 거래행위와 전통적인 편집권 보호관행에 의해 심의 규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일대일 쌍방향적 특성 때문에 이용자의 사생활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정책은 규제보다 진흥 정책을 위주로 펼쳐왔습니다. 1997년 미국 연방대법원¹⁾은 인터넷은 철도, 화물, 고속도로와 같이 상거래의 도구로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을 위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을 마비시키는 모순되는 법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한

1) 1997년 미국도서관협회가 파타키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해로운 정보 전송을 금지한 것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넘여줬다고 소송한 사건이 있다. 당시 뉴욕주는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 등 해로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E급 범죄에 해당, 1~4년의 형을 받도록 법률 제정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뉴욕주의 폐소를 판결했는데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전송을 금지하는 법이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을 마비시키는 모순되는 법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은 철도, 화물, 고속도로와 같이 상거래의 도구로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을 위한 도구라고 보았다. 뉴욕주에서 인터넷을 규제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 다른 주에도 뉴욕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금지한다고 해도 어린이 보호 이익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판결로 인해 다른 주의 유사한 법도 폐지되었다. (Janine 2003, 12-15)

다는 것과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전송을 금지하는 법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매체의 성격을 인쇄매체처럼 출판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언론매체와 동일하게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초기 인터넷은 텍스트 위주였고 접속 속도도 느리고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영상콘텐츠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대해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이 메일을 사용하고 스팸 메일에 노출되는 순간 음란물에도 노출됩니다.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야설과 야동이 거래됩니다. 좋은 정보가 있다며 메일 주소를 남긴 글을 보고 게임과 관련된 정보인 줄 알고 메일을 보냈다가 유해 정보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P2P, 카페, 채팅 사이트 등 청소년이 유해콘텐츠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는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아동포르노그래피와 성매매에 거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는 그 심각성에 비해 별다른 대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팅 앱의 위험성은 음란물 뿐만 아니라 성폭력·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 40개 이상의 주에서 인터넷 투어링을 범죄로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제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으나 다수의 주는 인터넷 투어링은 단순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박병식 2007).

독일은 청소년을 보호육성하는 사회문화적 전통이 깊습니다. 바이마르헌법

(1919)²⁾에는 이미 “언론·출판의 자유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체 환경의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규제정책이나 청소년보호정책은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한 범죄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U는 사이버범죄 협약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국가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규제에 소극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UN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은 보호하며 청소년에게 접근만을 차단하는 것이기에 아동·청소년 보호 라는 법익을 고려할 때 일정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랜덤 채팅앱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라는 성적 착취 위험에 노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과 제도의 보완을 제안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확대

사업 운영에서 아동 대상 성적 착취량 증가에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2) 제118조 ① 국민은 일반적 법률의 제한내에서 구두, 문서, 출판인쇄물, 도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 누구든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② 영화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경우외에는 검열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외설적으로 저속한 문학을 단속하거나 전시나 흥행에 있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공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조직 또는 기업들은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 집행기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이거나 법적의무에 의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다수의 아동 성착취 범죄에 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은 아동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매개 수단 이므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성 범죄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법 집행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및 차단(takedown)” 의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경찰 및 기타 법집행 기관에 아동 성범죄에 신고하는 등의 여타 신고를 실시할 경우 법기관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법 집행 기관에 완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청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추가하거나 제34조의 2를 신설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13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문에는 제17조의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제17조를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과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개정안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즉시 차단한 후 수사종결 후에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의 정보 2.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살 것을 제의하는 정보 4.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제의하는 정보 5.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정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 관련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유해 매체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은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는 사람들은 실명이 인정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인증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 될 경우 청소년 명의로 된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해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필터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 포인트 이용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것, 대화 내용 저장 가능 여부, 금칙어 관리 등도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법 정보에 포함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는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착취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불법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강요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벌칙과 과태료 조항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밖에 온라인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에 대한 조항 강화, 유도 수사 기법 도입,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전담 기구 설립, 민간 영역

모니터링 지원 강화하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한 사람 또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3.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참고자료 (16p~)

1.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2. 관련 오픈넷 토론회 <http://opennet.or.kr/10613>
3.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http://opennet.or.kr/9389>

메모

발표 4. 어플리케이션규제독약이아니라예방주사의역할

인터넷청소년보호시민단체클린UCC유영기대표 (cleanucc.org)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 기생해서 오염시키고 무한 확장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청소년 포함 성매매와 몸캠피싱 등의 게이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소극적 규제로 사실상 무법천지이다.

서비스의 발전 속도에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폐해 사례

서비스가 오염되고 심각한 수준이 되면 사실상 서비스 정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예1] 오마이러브, 시티조이 사례 (화상채팅 서비스)

[예2] 채팅메신저 버디버디(채팅 및 화상채팅)

[예3] 세이클럽, 스카이라브 (채팅 및 커뮤니티)

[예4] 개인 인터넷방송 서비스 (아프리카TV, 팍콘TV, 유튜브 등)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는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훼손하는일이 아니라 갈수록 유해한 스마트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성매매 및 몸캠피싱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인터넷방송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한 음란방송 및 성매매현황

일부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란방송 여성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들은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만든 뒤 구인 사이트와 구인 앱을 이용해 음란방송 진행자를 모집하고 수익을 배분하고 있으며 남성BJ와 후원자들과 2차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1) 어플리케이션 + 인터넷방송

가.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BJ들에 여성 게스트를 구하기 위해서 어플 활용

- 어플은 성인방송 진행자 어린 여성 게스트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나. 게스트 방송이 종료된 뒤에 2차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발생

다. 어플을 띄워 놓고 방송콘텐츠로 방송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청소년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성기나 가슴 노출해

라. 보도엔터에서 소속 여성BJ들의 부업으로 어플에서 성매매 활동

마. 게이어플에서 남성청소년 담배나 몇 만원 받고 동성성매매

2) 어플리케이션 + 유명 커뮤니티 홍보

가. 유명 커뮤니티에서 음란한 사진과 함께 어플 아이디 홍보

나. 단기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동원해서 무차별 홍보 진행.

다. 포털이나 주요 사이트 인기글 댓글로 성매매 어플 홍보

**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일시: 1차/ 2017년 4월 5일(수) 19시 ~ 21시
2차/ 2017년 4월 19일(수) 19시 ~ 21시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 9간담회실

◎ 주관: 국회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주최: 정춘숙 국회의원실·십대여성인권센터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십대여성인권센터

목 차

I . 전문가 초청 간담회 기획안	1
○ 간담회 취지	1
○ 2차 간담회 순서	2
II . 발표 자료	3
○ 발표1 조재운 대표 (성남교육희망네트웍)	3
○ 발표2 김경태 사무처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4
○ 발표3 조신숙 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7
○ 발표4 김한석 개발자 (LGCNS IOT 서비스팀)	9
III . 토론	11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마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기획안

○ 간담회 취지

1.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현실세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성매매산업이 가상현실세계에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매매의 시간과 공간, 연령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무한 확장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성매매를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대책이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2.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을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소·고발,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률 (제)개정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3. 2017년에는 그동안의 결과물을 토대로 4, 5월 중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발의를 목표로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왔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간담회는 2가지 주제로 개최하는데, 1차 간담회 주제는 쟁점이 되는 새로운 기술산업인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강화”,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호 합의점을 모색해 보는 것과 2차 간담회의 주제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법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열린다.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마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 2차 간담회 순서

19:00~19:10	사회: 김병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법률사무소 소도)
	인사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서순성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법무법인(유)원)
19:10~19:20	발표 1. 조재운 대표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19:20~19:30	발표 2. 김경태 사무처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19:30~19:40	발표 3. 조신숙 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9:40~19:50	발표 4. 김한석 개발자 (LGCNS IOT 서비스팀)
19:50~20:00	전문가의견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클린UCC 유영기 대표)
20:00~21:00	토론

발표 1. 랜덤채팅 어플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조재운 대표

1. 검토 배경

- 어플 개발사 및 사업자의 영세성
- 캡처 금지 및 삭제에 따른 증거확보 차단
- 육안 모니터링의 한계

2. 해결 방안 (조문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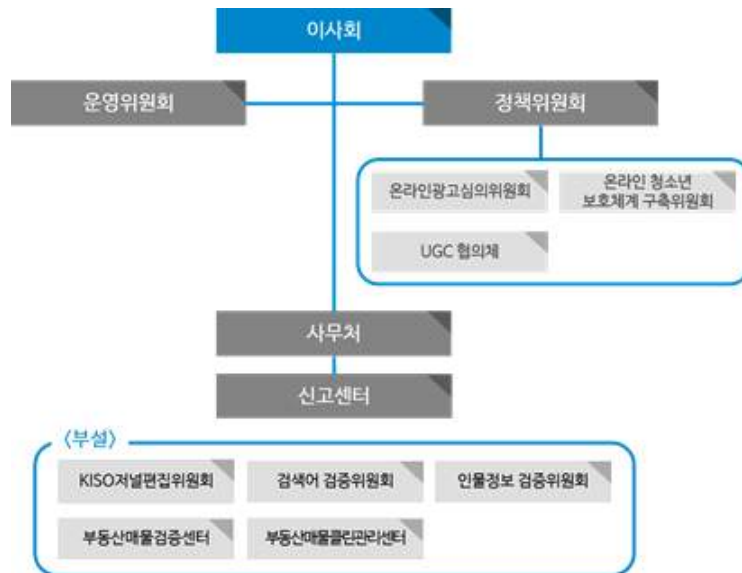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성매매의 알선·유인·광고 등(이하 “성매매 알선 등”으로 한다)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보호 기술적 조치를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술적 조치는 성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자, 대화 내용 등을 자동추출해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송받은 정보를 3월 이내에 분석하여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적 조치를 거부하거나 정보전송을 무력화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어플 등록기관에 삭제 요구해야 한다.
- ⑤ 기술적 조치와 관리시스템은 해마다 그 기능과 성능을 강화시키고 100% 정량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 ⑥ 제1항에서 제5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표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자율규제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김경태 사무처장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년 ‘이용자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책임의식 고취’와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목표로 7개 포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출범시킨 인터넷 분야의 자율규제기구. 2017년 현재 회원사는 카카오, 네이버, SK케이커뮤니케이션즈, 뽀뿌, 오유, SLRCLUB, 클리앙, 줌인터넷, 파코즈하드웨어, 아프리카TV 등 10개사.

1. 조직구성



- 이사회: 주요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 운영위원회: 이사회 보좌. 기구 운영 협의
- 정책위원회: 자율규제 관련 정책 및 심의 결정
-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

2. 정책위원회의 정책규정 및 심의

KISO 자율규제 활동의 요체. 3인의 회원사 위원과 5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 정책규정 :

-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제도의 법률적 미비사항 보완
-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검색어 정책 등 서비스 분야의 자율규제 정책
-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차별적 표현완화, 자살 예방, 사망자 계정 처리, 청소년 보호)
- 만장일치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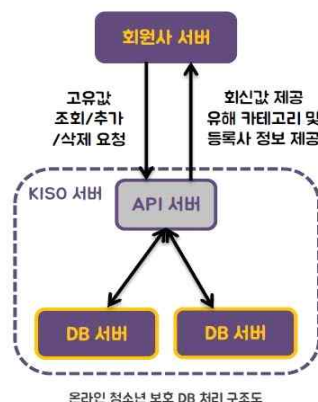
○ 심의결정 :

- 정책규정에 따라 개별 사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 다수결
- 온라인 심의를 통한 신속한 결정, 심의 결과 공개(심의결정문)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심의 사례를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회원사의 판단 기준 제공 (170건, '17.2 기준)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 온라인 청소년 보호DB 구축

- 청소년 보호 DB 구축 및 관리 정책 등의 논의를 위해 2014년 2월,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위원회'를 구성 (외부 위원 3인과 회원사 위원 2인)
- 2014년 9월 '온라인 청소년보호DB 구축' : 카카오, 네이버 공동으로 음란물, 성인물, 스팸 이미지의 해쉬값을 DB화하여 회원사 및 중소 사업자가 이미지 필터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2017년 4월 현재 약 100만 건)



○ ‘성매매 등 여성/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2012.09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 성폭력/성매매 유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활동
- 모니터링, 신고 결과를 KISO에서 취합하여 회원사에 전달
- 참여 회원사는 게시물 삭제, 이용자 제재 등의 조치
- 2016년 6월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2016년 서울시 MOU 신고 처리 현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업무협약 (2014.11 경찰청)

- 자살 의심 게시물 신고 접수 시 경찰청 안전국과 협력하여 이용자 구호 활동
- 2015년 64건, 2016년 132건

4. 인터넷 기업의 자율규제 참여 확대 - 현실적 이익

○ KISO의 노력 : 게시물 관리에 대한 표준 규약 제정/보급, 온라인 청소년 보호DB 구축, 선거 기간 중 게시판 서비스 운영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 ‘인터넷 개인방송인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보급

○ 제도적 지원 : 적극적인 자율규제 사업자의 법적 책임의 감면 등

발표 3.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의견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조신숙 과장

I. 정부정책 현황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성매매 알선·유인·권유 범죄 등이 ‘오프라인’ 영역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모바일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도 불법인 행위로, 성매매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으로 악용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에 공감함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의심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방심위는 채팅앱 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경찰청과 협업하여 채팅앱 등을 악용한 성매매 유인·알선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II. 랜덤채팅앱에 대한 규제 방향

- 우리부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랜덤채팅앱에 대한 관리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핵심은 규제대상의 범위인 것으로 판단됨
 - 랜덤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불법·유해정보 유통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를 설정해야 함
 - 랜덤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대상이지만,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가 면제됨

- 랜덤채팅앱은 실시간으로 생성·유통·삭제되는 정보(게시글)의 양이 방대하며, 공개되는 채팅앱 화면으로는 성매매 제안이 간접적으로 표시되고 실제 구체적 제안은 개인간 쪽지로 이루어지고 있어,
- 규제 대상의 범위를 채팅앱 전체로 규정할 경우 수범자 범위의 광범위성 문제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고,
- 성매매 알선·권유·유인정보를 유통하는 채팅앱으로 규정할 경우 성매매가 형사처벌 규정과 연계되어 있어 고의성, 입증의 책임 등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해야함
- 따라서 카카오톡 등 대중적 채팅앱과 구별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채팅앱으로 규제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규제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이행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함

III. 랜덤채팅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부과 방안

- 익명성*, 캡처금지, 대화내용의 휘발성(상대방 채팅방 퇴장시 대화내용 소멸) 등 랜덤채팅앱의 특성상 성매매 단속·수사를 위한 증거확보 어려움이 있음
-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닉네임, 성별, 나이, 지역을 임의로 설정한 후 이용 가능
-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는 랜덤채팅앱을 대상으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①성매매 제안 쪽지 등에 대한 신고버튼 탑재, ②화면캡처 방지프로그램 설치 금지, ③이용자 본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동 방안도 규제대상의 범위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발표 4. 채팅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검토

LGCNS IOT 서비스팀 김한석 개발자

1. 문자열 필터링 (금칙어 관리)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문자열 필터링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약어나 문자열의 조합 등을 이용하여 쉽게 등록된 문자열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번 등록된 문자열은 서비스 출시 이후 거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금칙어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하며 서비스 제공자 역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합니다.

2. 이미지 필터링

시중에 다수의 음란물 필터링 솔루션이 출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재의 기술로는 컴퓨터가 음란물을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1차적 검수는 필터링 솔루션이 담당하고 2차적으로 사람이 실제 이미지를 검수 하여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는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감지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솔루션, 검수인력의 사용 비용이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부담됩니다.

3. 사용자 신고에 의한 게시물 중단/ 자발적 제제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면, 사용자가 직접 음란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서비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제한하고 게시자는 소명을 절차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4. 음란물 필터링 어플 설치 단말기 감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 단말기에 유해물 차단앱의 설치 유무는 판별이 가능합니다. 유해물 차단앱 설치단말기로 부터 접속이 감지되었을 경우 서비스 사업자 자체적으로 접근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접속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5. 대화자간 나이차 기준 접근 금지

기술적으로는 나이차를 기준으로 채팅방에 대한 접근금지 제제를 할 순 있지만, 본인인증 절차 없이 사용자가 가입 되어있는 상태에선 실제 사용자의 나이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토론

메모